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62
----------	-------

발의연월일 : 2026. 4. 7.

발 의 자 : 서일준 · 김재섭 · 고동진
한지아 · 서천호 · 임종득
이인선 · 김 건 · 강명구
박수민 · 김희정 · 조승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철도안전법」은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의 과태료의 경우 금연지도원 등이 현장에서 흡연 행위를 단속하는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경우를 「철도안전법」에 따른 금지행위로 규정하면서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48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2조제4항제5호 신설).

법률 제 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행위

제82조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8조제1항제8호의2를 위반하여 역시설에서 흡연을 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 8. (생략)</p> <p><u><신 설></u></p> <p>9. ~ 11. (생략)</p> <p>② (생략)</p> <p>제82조(과태료) ① ~ ③ (생략)</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4. (생략)</p> <p><u><신 설></u></p> <p>⑤ · ⑥ (생략)</p>	<p>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① ----- -----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u>8의2.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행위</u></p> <p>9. ~ 11.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2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u>5. 제48조제1항제8호의2를 위반하여 역시설에서 흡연을 한 사람</u></p> <p>⑤ · ⑥ (현행과 같음)</p>